

과제번호: 2013-01-02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김 병 주(영남대학교)

2014년 7월

한국장학재단

과제번호: 2013-01-02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병주(영남대학교)
공동연구자: 김진영(건국대학교)
 남수경(강원대학교)
 이정미(한국교육개발원)
 이필남(홍익대학교)
 이희숙(강남대학교)
연구원: 김무영(영남대학교)
 서화정(영남대학교)
 박지윤(영남대학교)
연구협력관: 정원숙(교육부)
 홍성준(한국장학재단)

2014년 7월

한국장학재단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 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보고서로 최종 제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 연구기관명: 영남대학교
- 연구 기간: 2013.6.3 - 2014.7.31
- 연구책임자: 김병주(영남대학교)
- 공동연구자: 김진영(건국대학교)
- 공동연구자: 남수경(강원대학교)
- 공동연구자: 이정미(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이필남(홍익대학교)
- 공동연구자: 이희숙(강남대학교)
- 연구 원: 김무영(영남대학교)
- 연구 원: 서화정(영남대학교)
- 연구 원: 박지윤(영남대학교)
- 연구협력관: 정원숙(교육부)
- 연구협력관: 홍성준(한국장학재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정과제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현행 국가장학금 사업구조의 합리적 개편방향, 추진체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등록금 TF 운영 및 연구자문위원회
 - 교육부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TF’ 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교육부 관계관, 교육재정, 일반재정,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논하고, 국가장학금의 개편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함
 - 주요 검토 내용: 설문문항 검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 방식 모색, 대학별 자가진단 모형 탐색 및 모형 구성 요소의 타당도 진단, 장학금 개선방안
- 통계 자료 분석
 - 포물러 기초 통계 마련
 - 국가장학금의 양적 성과 분석
- 문헌연구
 - I 유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미국 Federal student aid의 지원대상,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본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조사, 성적기준 완화 또는 폐지안 검토시 12년도 성적기준에 의한 탈락자를 대상으로 기준 완화시 구제비율 통계분석 등
 - 정부, 대학의 공동분담 관련 해외자료 수집 및 정리
- 설문조사
 - 국가장학금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와 인식, II 유형 실태(성과 및 한계)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 조사대상: 학생, 교수, 직원, 학생처장

○ FGI

- 목적: 정부 및 대학의 적정 공동분담 비중, 정부의 예산 확보 방법, 대학의 지속가능한 자체노력 방법 등 검토
- 대상: 대학 기획처장, 대학 장학금 실무자,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총장

2. 국가장학금 사업의 개요

- 국가장학금의 추진 배경과 방향: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학생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유도 및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 국가장학금 사업의 추진체계는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함
- 국가장학금 사업의 운영방식을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절차,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대학내 배분방식,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원실적을 수혜 인원과 지원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함

3.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 이 장은 2012년 이후 현 국가장학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반적 문제점 및 한계들을 제시함
-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대학의 역할 제한 문제, 대학 구조조정 약화 문제, 실제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단가의 문제, 수혜자 책무성 확보 기제 미흡 문제,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의 문제, 국가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 우수 인재장학금 미흡의 문제 등임
 - 국가장학금의 지속가능성과 한계: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따른 대학 자체노력의 지

속가능성과 한계, 국가재정의 경직성 문제 등이 있음

- 대학의 역할 제한: 현행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기준에 의하여 장학재단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고,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에도 대학이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소득분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학의 자율권은 제한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약화: 국가장학금이 결국에는 한계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되어 대학 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부실대학 구조조정 약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실제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단가: ‘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수혜대상 역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1인당 수혜금액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아 학생 및 학부모의 체감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 기제 미흡: 국가장학금 지급을 통해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이 필요함
-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의 문제: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가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 기관 지원을 통한 대학간 차별적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되는 장학금의 여부, 규모가 달라짐. 학생이 어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수 인재장학금의 미흡: 국가장학금의 중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치중함으로써 우수 인재에 대한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이 미흡한 형편임

4. 주요국의 국가장학사업 운영 현황

-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국가장학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장학금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 제시하였음

□ 국가별 국가장학금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총 교육비를 산출하고 학생의 가계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가족기여금 수준을 결정한 후 총 교육비에서 가족기여금을 뺀 금액을 학생당 실질 필요 교육비로 결정한 후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는 같은 영연방국가로서 대학 등록금은 소득연계 상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는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상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총 교육비를 산출하고 이 금액을 월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학생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무이자대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대학생에 대한 기본 철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학생은 더 이상 부모의존적 학생이 아니라 가난한 성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정책 전반을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첫째, 대학교육부터는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의 1차적 책임이 학생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둘째, 대학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거나 소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등록금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대학생 자신에게 있으며 가난한 성인이라는 점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경제적 능력을 획득한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생활비 등 등록금 이외 비용에 대해서 대학생에 대한 기본 수당을 제공하고 있음

□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형평성 원칙뿐만 아니라 학생이 다니는 대학과 전공계열의 수월성 및 사회적 수익 등의 기준 동시 적용하고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시 대학교육의 외부효과와 사회적

수익을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학생분담금과 정부보조금의 지원 액수가 다름. 이는 사적 수익, 교육과정 운영 원가, 정부의 관심과 사회적 수익 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임
 - 등록금에 대한 지원과 생활비에 대한 지원의 접근 방식에 차별성이 있음. 생활비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기회 확대라는 형평성 중심으로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대학의 책임성 담보를 전제로 지원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대학 총 교육비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대하되 교육비 산출방식의 표준화방안 강구, 대학 차원의 총 교육비 정보 제공의 투명성 확보, 대학생에 대한 철학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대출 중심의 지원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학자금지원의 초점은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총교육비에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패키지형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을 통한 장학금 지원제도의 경우 대학의 수월성 기준 중시, 교부금 지원 이후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가장학금에 대한 대학의 운영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사업 간의 사업간 재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이동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대학별로 연방 근로장학금 총액의 최대 25%까지를 FSEOG로, 또는 반대로 FSEOG 총액의 25%를 근로장학금과 상호교류하여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FSEOG 남은 재원의 10%까지 1회에 한하여 이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국가장학금 재원의 일정 비율을 행정관리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 예컨대 학자금지원사정관 등의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FSEOG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서 행정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대응자금 요구시 다양한 방식의 선택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즉,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보다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생활비 지원 등과 같이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방식의 개선과 폭넓게 연계하여 국가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음

- 미국 FSEOG의 경우 대학의 대응자금으로서 현금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장학금이나 주정부장학금, 기타 기금 등의 유치를 통하여 대응자금 상당액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함
 - 영국 공립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수업료 상한액(2013/14학년도 기준 £6,000) 이상을 부과하는 대학(2013/14학년도 기준 상한액 £9,000)에 대해서 2012년 가을부터 새로운 국가장학금 프로그램(National Scholarship Programme, 이하 NSP)에 참여하도록 규정. NSP는 최소한 £3,000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업료 면제나 할인, 입학시 수업료 무료, 기숙사 등 다른 대학서비스 비용의 할인, 장학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상한액 £1,000) 등이 포함됨
- 대학과 교육부간의 계약 관계 형성시 표준화된 양식을 고안, 적용하되 일정 기간 예컨대 3년마다 계약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든든학자금(ICL) 등의 대학을 통한 지원사업의 계약 체결 등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양식과 관련해서는 Fiscal Operations Report and Application to Participate(FISAP)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FISAP는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FAFSA 양식과 유사한 구조로, 대학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임. 미국 연방정부 지원 대학기반 학자금지원사업(FSEOG, Federal Perkins Loan, FWS)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이 양식을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 영국의 경우 정부 등록금 상한액 이상을 초과하는 대학과 AA를 체결하는데, 정부 등록금 상한액이 동일한 동안 계약이 적용됨
 - 호주의 경우 정부와 대학간에 Funding Agreement를 맺고 정부보조금과 학생분담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자격으로서 일정 수준의 학업 책무성 요구하되, 일률적 기준보다 학생의 처지(예컨대 가계소득 수준)에 따른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호주나 일본의 경우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요구하기보다 학교 유형별로 재학하는 학생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상이한 자격 기준을 요구하거나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뉴욕주 TAP의 경우 학업기준과 관련하여 계속 지원 학업조건(Good Academic

- Standing)은 크게 두 가지, 즉 ①학업지속노력(Pursuit of Program; 이하 POP)과 ②학업성취(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이하 SAP)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제1종 장학금(무이자 대출)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업기준의 경우 학교 유형에 따라서 다름.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경우 2학년 성적이 3.5이상이어야 하며, 기술대학은 고교 3학년 성적이 3.5이상, 직업학교의 경우 고교 2학년 성적이 3.2이상, 대학원생의 경우 최상위 성적을 유지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제1종 무이자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학교유형별로 또한 설립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대학교로 갈수록 자격요건으로서 소득수준이 높으며, 동일한 학교유형의 경우에도 국·공립기관보다는 사립기관 학생에 대한 소득수준이 높게 정해져 있음. 이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직업학교 학생이 상대적으로 대학교 학생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고, 동일한 학교유형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국·공립기관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만큼 사립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간접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이나 호주처럼 공립대학체제로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등록금(학생분담금)에 대해서 상한액을 정부에서 직접 규정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총 교육비 수준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수업료 지원계획이 동반되는 대학의 경우 학생분담금(등록금) 상한액을 50% 이상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공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대학 내적 책무성 확보와 등록금 결정 자율성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오바마정부에서 대학평가 연계 또는 대학별 정보공개를 통한 간접 규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교육비 실태조사, 대학 재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증적 조사를 기반으로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생활비 대출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런던 소재 유무와 자택 통학 유무에 따라서 대출 상한액이 결정됨. 또한 재학 중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의무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일본 제1종 무이자대출의 경우 학교유형, 설립유형, 통학유형 등의 세 가지에 따라서 상이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을 월 단위로 산출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됨. 학교유형별로는 단기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보다 대학교와 대학원에,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통학유형별로는 자택 통학자보다 자택 외 통학자에게 대출 지원금액이 더 많음
- 호주 국가장학금 Indigenous Access Scholarship의 경우 지방이나 시골 출신 토착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 집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5.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설문조사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임
 - 조사대상 중 대학생의 경우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90만명중 1%인 9천명을 무선표집하였음
 - 조사방법은 대학생의 경우 표집학생의 e-mail로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여 808명이 응답하였으며, 표집대상의 e-mail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응답률은 9.0%였음
 -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어 담당 교수 및 직원이 설문응답 온라인 주소를 클릭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51개 대학 270명이 응답하였음

□ 심층면담

- 국가장학금의 문제와 과제, 개선방안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장학금 담당자와 총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 면담대상 장학금 담당자의 소속대학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2개교, 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 2개교, 지방 대규모사립대학 2개교임
 - 면담대상자는 총 15명이며, 성별로는 남직원 8명, 여직원 7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2명, 30대 6명, 40대 7명임

- 면담대상 총장은 총 5명이며, 면담대상자의 대학유형은 수도권 대형사립대, 지방 대형 국립대, 지방 중소형 국립대, 지방 대형 사립대, 지방 중소형 사립대임.

6. 국가장학금에 따른 사립대학재정의 변화

- 이 장에서는 사립대학들의 재정현황과 사립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장학제도와 관련한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 분석 결과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9~2012년 사이의 경험을 보더라도 재정지출 규모가 감소하고, 운영수익률이 감소하고,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황 악화의 징후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이후 4년제 대학의 전체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9%에서 60.5%로 5.4%p 감소
 - 4년제 대학의 경우 2009년과 2012년 사이 재정규모가 축소된 학교가 29개교로 분석대상 학교의 약 20%나 됨. 또한 재정규모가 명목상으로는 증가하였더라도 동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약 9.7%를 밀도는 학교들도 22개교나 됨. 즉, 분석대상인 156개 학교 중 실질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된 학교들이 51개교로 1/3에 가까운 상황임
 - 전문대학의 경우 2009년 이후 전체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에서 61.7%로 6.6%p 감소하여 4년제 대학보다 더 큰 폭의 등록금 비중 감소를 보임
 - 전문대학의 경우 2009년과 2012년 사이 재정규모가 축소된 학교가 10개교로 분석대상 학교인 126개교의 약 8%에 해당함. 또한 재정규모가 명목상으로는 증가하였더라도 동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약 9.7%를 밀도는 학교들도 99개교나 됨. 즉,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규모 증가를 보인 학교들이 86.5%에 달하는 상황임
 - 등록금 규모와 등록금의 증가는 총재정규모나 총재정 규모의 증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
 - 4년제 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증가율이 2009년 이후 4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간 학교들의 총수입 상승률 평균은 25.6%이며 등록금 수입의 증가

율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학교들의 총수입 상승률은 9.2%로 역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등록금 수입 증가율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학교들은 총수입이 평균 23.6% 증가한 반면 등록금 수입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의 총수입 증가율 평균은 7.3%로 역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즉, 등록금의 증가가 억제될 경우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전반적으로 운영수익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4년제 대학의 경우 2009년과 2012년 운영수익률((운영수익-운영지출)/운영수익)의 분포 차이를 보면,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분포가 왼쪽으로 확연히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운영수익률의 연도별 평균은 21% → 18% → 15% → 1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적자의 빈도는 2009년에는 없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1곳, 2012년에는 3곳으로 늘었음
- 전문대학의 경우 운영수익률의 연도별 평균은 역시 4년제 대학과 유사하게 21% → 19% → 16% → 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적자의 빈도는 2009년 6개교, 2010년과 2011년에는 8개교, 2012년에는 13개교로 증가하고 있음. 운영수지 적자의 빈도로 보면 전문대의 상황이 4년제 대학에 비해 더 악화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음

○ 등록금 대비 인건비의 증가는 대학 재정에서 경직성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신호로 이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때 대학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등록금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학교들 사이의 분포를 보면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 지표가 각각 50%, 60%, 70% 이상인 학교들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라고 분류할 때, 이러한 학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위험군을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 7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2009년에는 4년제 대학만도 위험군이 21개교에서 2012년 23개교로 증가하며, 위험군을 동 지표 6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2009년 29개교에서 2012년 52개교로 증가하는데 이는 분석대상 학교의 1/3에 해당함. 위험군을 동 지표 50% 이상으로 잡을

경우 2012년 109개교가 위험군에 포함되며 이는 2011년의 91개교에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전문대학의 경우 위험군을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 70% 이상” 으로 잡을 경우 2009년의 5개에서 2012년에도 11개로 증가하며, 위험군을 동 지표 60% 이상으로 잡을 경우 2009년 11개교에서 2012년 37개교로 증가하고, 위험군을 동 지표 50% 이상으로 잡을 경우 2009년 46개교에서 2012년에는 72개교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변화가 커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암시하고 있음
- 평균수치 만으로는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지만 분포 상으로는 재정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학교 수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등록금 증가율을 크게 넘는 인건비 증가율

- 2009년에서 2012년 4년 사이 등록금의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은 큰 차이를 보임
- 등록금이 동결된 반면 인건비의 경우 호봉상승으로 인한 상승과 추가적인 고용으로 인한 상승 등의 요인이 있다고 보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의 정책 목표는 (1) 최우선적으로 교육의 질 확보에 두고 (2) 이러한 질적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등록금이 유지되도록 하며 (3) 국가장학금과 대출제도의 적정 조합을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지나친 등록금 인상 억제 압박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완화할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할 것임

7.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과와 한계

□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지원대상대학을 제한함으로써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즉, 개인 지원을 통한 가계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의 구조조정의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사업의 목표임

- 국가장학금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등록금 부담 완화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학업에 집중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어 대학을 적기에 졸업하고 양질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도록 돕는 것이 장학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과로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와 대학의 구조조정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학생의 학업성취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장학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국가장학금 사업은 국가장학금 및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고 있음. '12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1.75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를 통해 소득 8분위 이하 37.3%, 전체학생 33.3%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나타났고, '13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2.775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소득 3분위이하 56.4%, 소득 8분위이하 47.3%, 전체 41.6%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됨. '13년에는 I 유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 8분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음
- 정부와 대학의 부담 구조 하에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3년 고등교육재정 7.7조원 중 장학금은 약 3조원으로 40%를 차지하였고, 순 재정지원은 5년간 5,545억원 증가에 그침('08년 3.78조원→'13년 4.33조원). 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및 신규사업 추진 저해 등 예산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 대학의 추가적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관련 자체노력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의 II유형 참여 독려가 필요함. 대학이 이미 3조원 이상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추가적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음에 따라 II유형 참여 대학이 '12년 336개 대학에서 '13년 288개 대로 감소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 따라서, II유형 금액을 대학의 외부장학금으로 인정하여 각종 재원지원사업의 장학금지급률 지표에 반영하고, 대학별 자체노력 규모 산정시 적립금 규모와 재정여건, 교육비환원을 등을 고려한 차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장학금사업으로 인하여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재학생 비중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재학생 비중은 9.3%인데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을 합한 총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0.4%에 달하였고, 특히 국가장학금 II 유형 총 지원액 중 11.6%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배분되었으며 평균 수혜액은 61만원이고, 재정지원 대상대학의 평균 수혜액은 4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상대학 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이중차분 결과를 보면, 정책시행 전후로 두 집단간 신입생 충원율 차이가 -0.117로서, 정책 시행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0.12%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즉,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매우 미미한 정도로 하락해서 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졌음. 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평균 장학금 확대가 일정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국가장학금 사업의 당초의 취지는 대학의 자체노력 수준에 상응하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으나, 부실한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에 의지하여 대학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비수혜자 그룹의 학업성취 향상도가 수혜자 그룹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장학금 비수혜자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장학금 비수혜자의 학업성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국가장학금 비수혜자는 다음 학기의 국가장학금 수혜자격(80점 이상)을 갖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둘째, 기본적으로 수혜자의 평균 성적이 비수혜자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데 기인함. 실제로 2012년 1학기 기준 수혜자의 평균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 0.1점 상승한 반면, 미수혜자의 평균성적은 3.2점 상승하였음. 셋째, 수혜자의 경우 학업시간, 개인의 최종 목표학력 등 다른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따라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장학금 유지를 위한 최소평점과 매학기 최소 이수학점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책임 및 동기부여의 효과를 보고하는 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가장학금 제도 설계 시 학생들에게 일정 책임을 지움

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가우수인재 육성, 고등교육기회 형평성 제고, 수혜자 책무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상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 등의 학자금 지원정책의 종합적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미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지속적·일률적 등록금 보조는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 기보다는 단순히 대학교육비용만 낮추는 역할만 할 수 있음. 학생이 속한 가구소득보다는 학생의 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8. 국가장학금의 주요 쟁점

- 국가장학금의 주요 쟁점은 공통사항, I유형 관련, II유형 관련, 개선방안별 쟁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공통 사항의 쟁점으로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 완성 시기, 정부/대학/학부모의 분담구조, 구조조정과의 연계 문제, 자체노력 유도 및 등록금 적정 수준 권고 문제, 소득분위 산정방법/소득분위 예측가능성 문제, 장학금 관리비 신설의 필요성 및 범위 문제 등이 있음
 - I유형 관련 쟁점으로는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범위, 국사립 구분없는 기준금액, 성적기준 완화(2분위 이하, C학점 경고제 등), 국가에 의한 직접 지원 및 대학에 의한 지원 등이 있음
 - II유형 관련 쟁점으로는 장학금 지급자격(성적제한) 등에 대한 대학 자율성 부여의 한계, 평가에 의한 대학간 차등 지급 가능성, 등록금 인상 가능여부(인상액의 절반은 장학금 지급 명문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활용, 과거 노력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자체노력 혹은 평가에서 등록금/장학금 이외 이월금 항목의 반영 가능성 등이 있음
 - 개선방안별 쟁점은 대학 자율 지급형, 국가책임 지원형, 현행 유지 강화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이는 국가장학금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

9. 대학의 장학금 지원 인프라 구축

- 이 장에서는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위한 대학별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먼저 우리나라 대학의 장학금 지원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았음. 여기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장학재단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의 장학금 지원 인프라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음
- 여기에는 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조직 현황, 장학부서의 주요 업무, 장학사정관계의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됨

- 다음으로 대학 장학금 지원 인프라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음. 여기에는 국내 장학사정관계 운영 우수사례 정리, 미국 주립대학의 학자금지원 부서의 역할과 조직, 미국의 National Training for Counselors and Mentors 등이 포함됨

- 앞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토대로 대학의 장학금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여기에는 학자금지원 부서 위상 강화와 재구조화, 장학사정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장학사정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장학사정관 선발의 자격요건 정립, 장학사정관에게 필요한 직무역량 고양, 장학사정관 재교육 프로그램(안)의 구성 등이 포함됨
- 장학사정관 재교육 프로그램(안)의 구성을 위해서는 8가지의 모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1)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2) 학자금 지원 연간 운영계획과 지원 절차, 3) 국가장학금의 지원 자격과 결정과정, 4) 학자금대출의 지원 자격과 결정과정, 상환관리, 5) 근로장학사업의 운영, 6) 학자금지원 패키지의 제공과 수혜에 대한 공지, 7) 학자금 지원 재원의 정산, 8) 전문적 판단 등이 포함됨

10. 국가장학금 사업의 개선방안

- 여기서는 국가장학금 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III장에서 제시한 국가장학금의 한계 극복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단기 개선방향과 중장기 개선방향을 구분하여 제안함

- 중장기적인 국가장학금 개선의 기본 방향을, 1) 국가장학금 사업 전반의 체계화,

2)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의 개편, 3)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제 구축, 4) 국가장학금 지원 인프라의 구축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 국가장학금 사업 전반의 체계화는 국가장학금 사업 전반에 대한 목적 및 유형의 명료화, 근로장학금의 확대를 포함함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의 개편은 국가장학금, 대학장학금, 든든학자금의 역할과 기능 분담, 장기적으로 대응투자형 국가장학금 축소 및 지양을 포함함
- 학생의 필요에 맞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제 구축은 학생의 소득 수준과 형편에 맞는 국가장학금 지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대학 학자금 지원 인프라의 효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지원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대학의 학자금 지원부서의 위상과 역할 재구조화를 포함함

□ 이 절에서는 III장에서 제시한 국가장학금 사업의 전반적 문제점 및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대학의 역할 제한 문제, 대학 구조조정 약화 문제, 실제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단가의 문제, 수혜자 책무성 확보 기제 미흡 문제,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의 문제, 국가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 우수 인재장학금 미흡의 문제 등이며, 이들 각각에 대한 극복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였음

□ 국가장학금의 단기 개선방안은 2014년 개선방안과 2015년 개선방안으로 구분됨. 먼저 2014년 개선방안에서는 현행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 체제를 유지하되 각각의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
 -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
 - '13년 불용 및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II 유형 규모 적정수준 반영

-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 기본방향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C학점 경고제 시행,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저소득층 장학금 규모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개선방안으로는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장학금 확충 유도, 대학의 자체노력 연계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음
 - 추가적으로 지방대 참여 유인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장학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추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 2015년 국가장학금 개선방안에서는 국가장학금이 완성(4조원 확보)된 것을 전제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설문 및 면담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본방향으로는 대학자율성 제고(사업참여, 장학관리비신설등)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 저소득층 중심 지원과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음
- 2015년 국가장학금 I 유형의 개선방안에서는 소득 8분위 이하(120만명)를 대상으로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6분위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7~8분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성적기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80점을 유지하되, 기초~2분위 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함.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하되, 장학금 총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소득 7~8분위에 대해서는 성적기준을 우수장학금 지원기준인 87점으로 상향 조정함. 이 경우 기존 수혜자의 저항없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자율지급형으로 전환된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원함

- 지급기준 단가를 500만원으로 인상함. 지급기준 단가 450만원은 사립대학생들에게는 부족한 금액으로서 꾸준히 인상요구가 있어 왔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액은 3조 8,400원으로서 무작정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할 수는 없으며, 시뮬레이션한 결과 500만원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단 사회복지 통합망 활용에 따라 소득분위가 변경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 필요함
- 2015년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개선방안에서는 5,000억원 수준의 총 지원규모를 유지하되('13년 7,000억원, 14년 5,000억원), 참여유인을 유지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 유도를 지속함
 - 1안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분담분을 유지하는 것임. 이제는 대학의 자체노력 분담분의 유지가 필요하며, 추가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14년도 규모 이상 유지한 대학이면 II 유형 참여가 가능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안은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등록금 인상 일부를 허용하는 것임.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을 '14년도 규모 이상 유지한 대학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등록금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임.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2015학년도의 경우 등록금 인상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2016학년도에는 60% 이상, 2017학년도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완화함.
 - 3안은 시범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대해서 포물러 펀딩을 적용하여 배정하는 것임. 포물러에는 소득분위별 재학생수가 가장 중요한 지수가 되도록 설정하되, 등록금 완화지수를 부가적인 지수로 활용함. 기본적으로 포물러에 의한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배분은 성과중심이 아닌 규모와 필요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한 매우 미흡대학 및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포물러에 의한 국가장학금 지급을 제한함
- 2015년부터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함.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월 공포)으로 금융·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분

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14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15년부터는 전면 시행함
- 국가장학금의 중장기(2016년 이후) 개편방안은 1) 국가장학금의 대학 자율지급형, 2) 전액 국가지원형(현행 국가장학금 I유형 중심 통합형), 3) 현행 유지 강화형(I, II 유형 구분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국가장학금의 대학 자율지급형은 국가장학금 I(소득연계 차등지원)·II(대학자체 노력 연계지원)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임. 정부는 대학에 저소득층 보호와 인재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학생의 소득분위만 제시하고, 대학은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의 자체 장학금 재원과 통합하여 자체적인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 전액 국가지원형은 현행 국가장학금 I유형 중심 통합형임. 현재의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는 국가장학금 중에서 II유형을 폐지하고, 모두 I유형의 국가장학금 형태로 소득분위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individual-based aid)하는 방식임
 - 현행 제도의 유지 강화형은 현재와 같은 I유형과 II유형의 결합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되, I유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의 형태로 산술 수치에 따른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II유형은 정책적 요구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하되, 현재 제도 보다는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국가장학금을 현재와 같이 개인지원형의 I유형과 기관지원형의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책적 상황 및 예산의 상황에 따라 국가장학금 전체 구성에 있어서 각 유형의 구성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I유형 강조형, II유형 강조형 등으로의 운영이 가능함
 - 국가장학금은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율지급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총장들은 대학자율지급형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음. 심층면담에 참여한 직원들도 현재의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같이 자체노력 대응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학 자율지급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음
 - 국가장학금을 대학 자율지급형으로 개편할 경우, 대학의 책무성 제고와 이를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사후 평가 및 사후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자율지급형 국가장학금의 사후관리 및 사후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의 확보 및
운용이 필요함

- 대학 학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 119」(가칭)의 제정, 학자금지원 부서 위상 강화와 재구조화, 장학사정관제도의 운영 확산, 장학사정관의 역할과 기능 정립, 장학사정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정리됨